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만홍
전화 02-2204-4201

보도자료

2024. 4. 29.(월)

제목

조달청 등을 속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1,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인조잔디 업자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(부장검사 최순호)는 국회의원 甲이 지역구 소재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(2024. 3. 18. 甲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)에 대한 수사 중,

- 해당 업체가 전국의 학교 운동장,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, 원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,665억 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오늘(4. 29.) 해당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음

● 피고인들은 조달청 '우수조달물품'으로 지정받은 제품의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,

-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① 실물이 없어 성능시험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인조잔디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'성능인증'을 받고, ②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(소위 '바지 대표이사')로 내세워 '장애인기업 확인'을 받은 후,
- 조달청에 ③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, 허위 시험성적서 및 실물이 없음을 감추기 위한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하여,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'우수조달물품 지정'을 받아 조달청과의 제3자단가계약*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해지자

※ 제3자인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(조달청 우수조달물품)에 대하여 조달청이 납품업체와 판매단가를 정해 체결하면, 각 공공기관은 입찰절차 없이 그 단가대로 구입하는 계약

- ④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달청을 기망하여 2018. 10.경부터 약 6년간 총 1,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(1건 평균 1억 1,200만 원, 최고 28억 원)함으로써 1,66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(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 약 509억 원)

※ 매출액이 2018.경 48억 원에서 2019.경 255억 원으로 급등하였고, 2020년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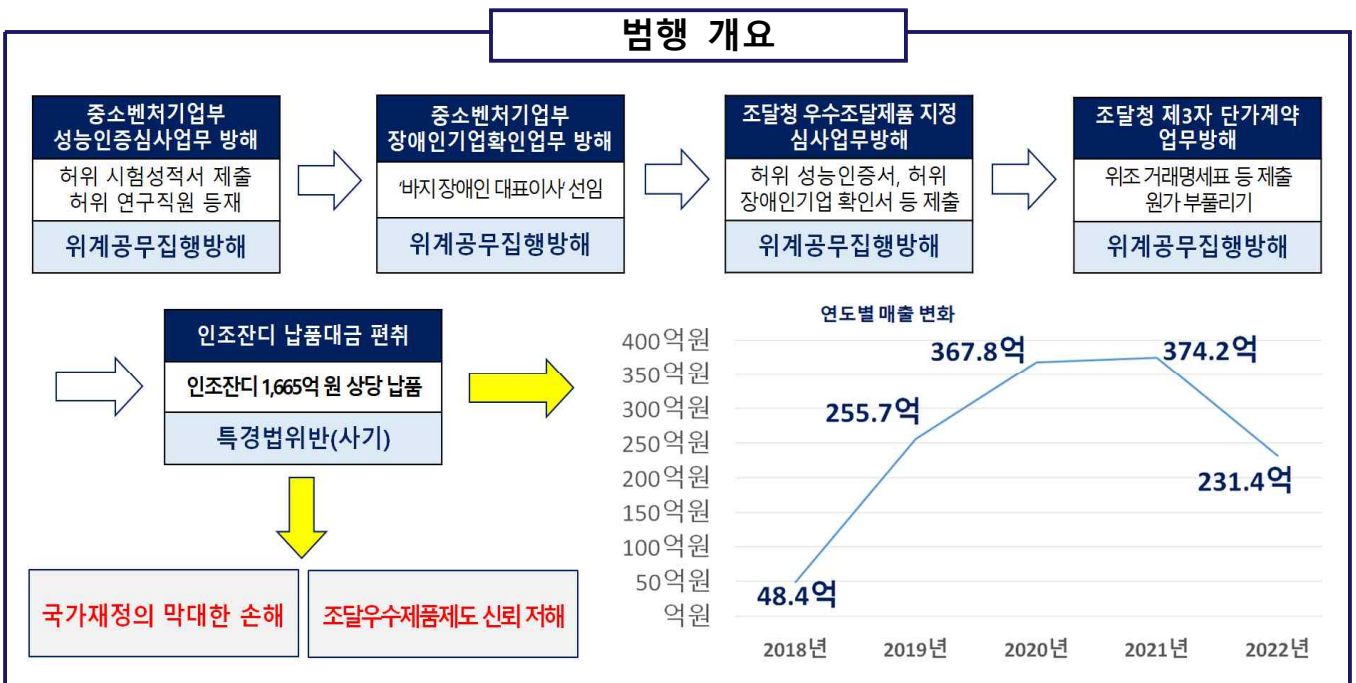
- 이 사건은 연간 1,900억 원 규모(2023년 기준)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**인조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규모의 납품비리로,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,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심사통과율이 19.9%에 불과한 '우수조달물품 지정'을 받는 등 각종 성능인증 및 조달심사 제도를 무력화시킨 중대범죄임**
- 서울동부지검은 조달청과 협력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**범죄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며,**
 -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납품 비리를 엄단해 나갈 예정임**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. 피고인

- A○○ [55세, 인조잔디 제조·납품업체 공동대표]
 - ※ 前 국회의원 甲이 A○○으로부터 1억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前 국회의원 甲 구속(2024. 2. 29.) → 甲 및 A○○ 등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(2024. 3. 18.)되어 재판 중
- B○○ [53세, 인조잔디 제조·납품업체 공동대표]
- C○○ [39세, 인조잔디 제조·납품업체 직원(차장)]
- D○○ [39세, 인조잔디 제조·납품업체 직원(과장)]

2. 공소사실 요지



◆ 구체적 공소사실은 [별첨] 참조

가.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- 위계공무집행방해, 특정범위반(사기) 등

- '17. 9. 허위 인조잔디 시험성적서, 허위 인사발령장 제출 → 인조잔디에 대한 중소기업부 성능인증 취득 [위계공무집행방해]
- '17. 9. 장애인 '바지 대표이사' 선임 → 중소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취득 [위계공무집행방해]
- '18. 4. ~ '22. 7. 조달청에 위 성능인증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 및 허위 시험성적서,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 제출 → 총 7종의 인조잔디에 대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[위계공무집행방해]
- '18. 7. ~ '22. 10. 거래명세표 위조하여 조달청에 제출 → 원가를 속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* 체결 [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]
※ 제3자인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(조달청 우수조달물품)에 대하여 조달청이 납품업체와 판매단가를 정해 체결하면, 각 공공기관은 입찰절차 없이 그 단가대로 구입하는 계약
- '18. 10. ~ '24. 3. 인조잔디 가격을 합계 509억 원 상당 부풀려 학교·지자체 등에 총 1,479회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대금 합계 1,665억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 등

나. 피고인 A○○의 단독범행 - 특정범위반(횡령)

- '14. 7. ~ '23. 9. ▲허위직원에게 급여 지급 후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 등 방법으로 합계 116억 원 ▲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1억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합계 117억 원 횡령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

II 수사 경과

- '23. 9. ~ '24. 3.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상대 로비 및 납품비리 관련 범죄정보 입수 후 사무실·주거지 압수수색, 관련자 소환조사 등
※ A○○의 국회의원 뇌물공여 사건은 2024. 3. 18. 前 국회의원 甲을 구속기소하면서 함께 기소
- '24. 4. 2. 검찰 A○○, B○○, C○○ 구속영장 청구 → 법원 기각
※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
- '24. 4. 2. ~ 26. 피고인들 및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
- '24. 4. 29. 피고인들 기소

Ⅲ

수사 결과 및 의의

1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을 속여 사익을 취한 범행 규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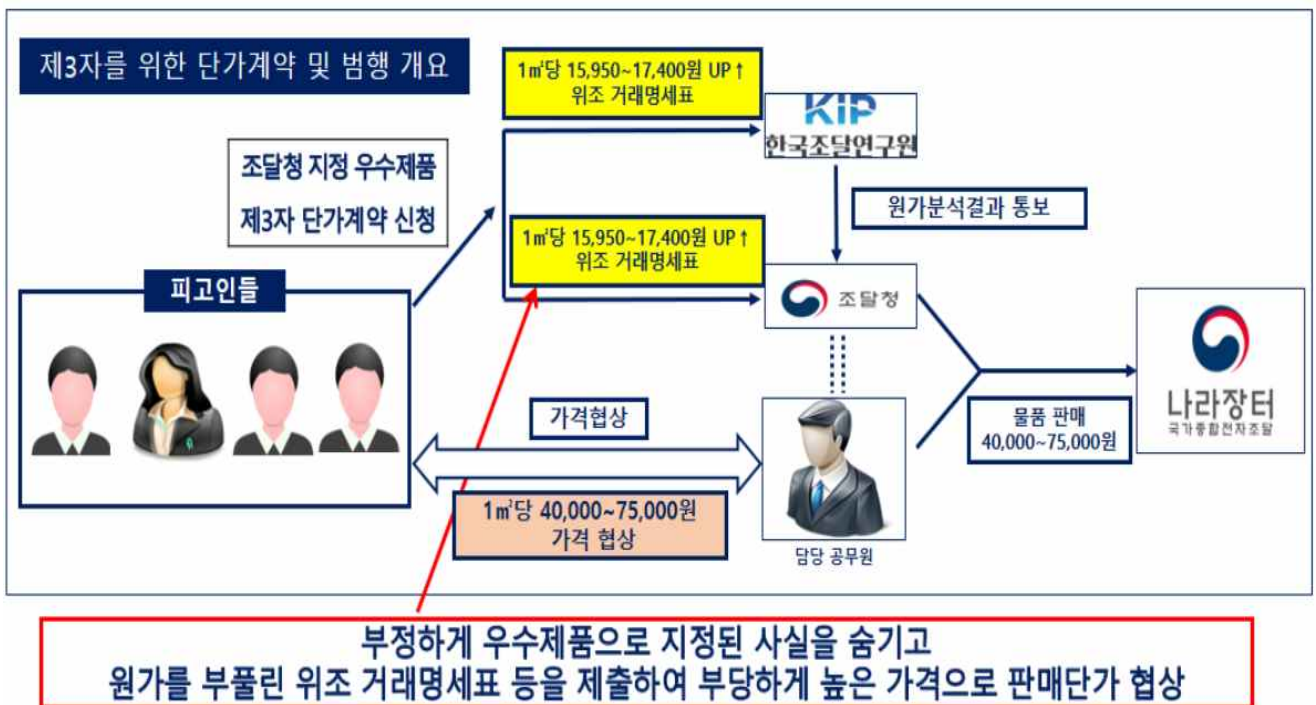
- 피고인들은 개발단계에 불과하여 실물이 없던 인조잔디를 조달납품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속인 것으로 밝혀짐
 - 중소기업부 성능인증에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,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, 제3자단가계약 가격협상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**적극적인 자료조작과 허위자료 제출** 등으로 국가기관을 속인 사실이 확인됨
 - 공동대표인 A○○와 B○○는 범행을 총괄하며 직접 **‘장애인 바지 대표이사’를 물색·선임하거나 허위 연구직원을 등재**하고, 중소기업부, 조달청의 업무담당자를 속이기 위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였으며,
 - 실무자인 C○○와 D○○는 ▲**허위 시험성적서 발급**, ▲**허위 회사조직도 및 인사발령장 작성**, ▲**실물이 없어 과거에 시공한 전혀 별개의 인조잔디 설치 사진 첨부**, ▲**허위 거래명세표 위조**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음
-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 결과, 피고인들은 심사통과율 **19.9%**에 불과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통과하였고,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관련업체 중 가장 많은 1,665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불법 납품한 것으로 드러남

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시공사례(전혀 별개의 기존 인조잔디 시공사례) 사진



2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계획적 납품 비리 확인

- 피고인들이 개발단계에 불과하여 실제 생산한 적이 없어 ▲ 원자재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자재 거래를 한 것처럼 원자재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, ▲ 높은 판매단가로 납품하기 위해 원자재 거래명세표상의 원자재 가격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되었음
-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진행하여, 인조잔디 1㎡당 판매단가(40,000~75,000원)의 23.2~39.8%에 해당하는 15,950~17,400원을 부풀려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, 총 1,479회에 걸쳐 **합계 1,665억 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학교·지방자치단체 등에 부풀린 가격에 납품** -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무려 5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



3 대규모 국고손실과 우수조달물품 심사 제도를 무력화한 범행 적발

- 피고인들이 위조 거래명세표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려 인조잔디를 납품한 결과, **약 509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**되었고, 관급납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**인조잔디 시장질서의 공정성이 훼손**되었음

- 허위 시험성적서, 허위 연구팀 등재 및 장애인 바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위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을 통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임
- 이 사건 수사로 피고인들이 사익추구를 위해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폭리를 취한 범행의 진상을 확인하였음


4 범죄수의 환수 및 재발방지 조치 강구

- 검찰은 피고인들이 납품한 인조잔디의 실제 원가와 납품가액,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액(509억 원)을 직접 산정하고, 이를 기초로 조달청과 협조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함

※ 조달청은 통상 ▲당해 계약의 평균 이익금액, ▲계약 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, ▲부당한 납품금액과 정당한 납품금액의 차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환수 조치를 진행함

- 아울러,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인조잔디가 판매되지 않도록 조달청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음

IV 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관급납품 비리를 엄단해 나갈 예정임 

[공소사실 요지]

순번	피고인	범죄사실	처리결과
1	A〇〇(55세) (인조잔디 제조·납품 업체 공동대표)	<p>[A. B, C, D의 공동범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7. 9.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제요건인 중소기업부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해, ▲ 기존 인조잔디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실물이 없던 이 사건 인조잔디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허위 제출하고, ▲ 존재하지 않는 연구팀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인사발령장 등을 제출 →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취득 [위계공무집행방해] ‘17. 9.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, 직원의 장애인 아버지를 소위 ‘바지 대표이사’로 선임한 후 심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함 →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확인 취득 [위계공무집행방해] 	<p>기소 (‘24. 4. 29.)</p>
2	B〇〇(53세) (인조잔디 제조·납품 업체 공동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8. 4.~’22. 7. 위 중소기업부 성능인증서, 장애인기업 확인서, 허위 시험성적서,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 → 총 7종의 인조잔디 제품에 대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[위계공무집행방해] ‘18. 7.~’22. 10. 조달청과 ‘제3자단가계약’ 협상 과정에서, 제조 원가를 부풀린 위조 거래명세표 제출 → 원가를 부풀려 단가계약 체결 [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] 	
3	C〇〇(39세) (인조잔디 제조·납품 업체 차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8. 10.~’24. 3. 부정하게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인조잔디 가격을 합계 509억 원 상당 부풀려 학교·지자체 등에 총 1,479회에 걸쳐 납품하고 대금 합계 1,665억 원을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 <p>[A. B의 공동범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20. 2.~’24. 2. 시공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들이 포함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를 거짓 작성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 [건설산업기본법위반] ‘05. 5.~’23. 12. 건설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총 29명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,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음 [건설기술진흥법위반, 국가기술자격법위반] 	
4	D〇〇(39세) (인조잔디 제조·납품 업체 과장)	<p>[A의 단독범행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‘14. 7.~’23. 9. ▲ 허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25억 원,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허위 회계처리 방법으로 91억 원 등 합계 116억 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하고, ▲ 회사 자금 1억 원 상당을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사용하는 등 총 117억 원을 횡령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 	